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 감소
조치 및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6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0626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 감소 조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등 마련(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0조)	3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0626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05.
3. 회 부 일 : 2024. 12.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휴·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조), 시외 또는 고

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 감소 조치 및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 (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0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¹⁾의 휴업·폐업 관련 허가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터미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업의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게 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신설)

또한, 여객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 및 국가가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4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제48조(준용규정) ----- -----법인의 합병, 상속 등에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를-----. 제4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터미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③ (생략)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⑤ ~ ⑨ (생략)	<u>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u> 제50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u>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2. (현행과 같음) <u>3. 제5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u> ⑤ ~ ⑨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최근 승용차 보급 확대, 고속철도 등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및 인구 감소 지역 증가 등에 따라 민영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²⁾³⁾.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운영 수익은 매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인데,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매표 수수료가 감소하고, 터미널 상권도 축소돼 입점 상가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⁴⁾.

이러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으로 인해 인구가 적고 교통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소외된 지역의 주민일수록 더욱 불편을 겪는 상황임.

현행법 제36조⁵⁾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법 제48조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해서

2) 현재 전국 여객터미널 283개 운영 중이며, 최근 5년(2020~2024년)간 24개 민영터미널이 경영악화로 폐업(2024년말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제공))

3) 시외·고속버스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지난 2019년의 약 60% 정도에 그쳤으며, 2024년 12월 8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터미널협회)에 따르면 매표 전산망이 설치된 전국 247곳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상반기 월평균 이용객은 838만4천972명임.

(자료 : 현연수 기자, “전국 버스터미널 상반기 이용객, 2019년의 60% 그쳐“, 매일경제TV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419145, 최종검색일 : 2025.1.8.)

4) 출처 : “공용 버스터미널 지원대책 마련하라”,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786>, 최종검색일 : 2025.1.8.)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휴·폐업에 관한 법 제16조(제2항 제외)⁶⁾를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16조제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⁷⁾에 따르면 터미널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한 내용을 준용규정으로 두지 않고 별도로 신설하여, ① 시·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신설), ② 시·도지사가 해당 터미널사업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를 권고하거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신설), ③ 휴업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기존 준용 규정과 동일), ④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미리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며(기존 준용 규정과 동일), ⑤ 국가 또는 시·도가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신설)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터미널 휴업이나 폐업의 시기를 터미널사업자나 이용객이 예측하기 용이하도록 하며, 철회 권고 및 매표 수입 감소액의 보전을 통해 휴업이나 폐업을 방지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말 기준 군 소재 지역 여객터미널 총 142개 중 80.3%인 114개⁸⁾가 민영 여객자동차터미널인 것을 감안할 때,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를 줄이며 전국 교통인프라 형평성과 시민 이동권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자료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다만, 현행법 제50조제2항제4호⁹⁾에는 이미 시·도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다. 관련 기관 등 의견

(국토교통부)

현행 준용 규정과 동일한 안 제48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터미널의 예고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신속·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해 휴·폐업 허가 처리기간(2개월 이내) 신설에 동의함.

다만, 주요 버스터미널의 휴·폐업으로 버스 운행중단 등 이용자 불편 예상시, 시·도지사에게 사업개선명령권을 부여(제3항)하는 조항은 법체계상 현행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행법 제50조제2항제4호 상 “터미널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경영 어려움에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동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은 '22년 133.7억, '23년 118.2억, '24년 14.5억임.(자료 : 국토교통부(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제공))

따라 지방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터미널도 있으므로 터미널 매
표수익 감소액 보전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낮다고 보임.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버스운행 차질 방지를 위한 휴·
폐업일 이전까지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허가 여부 통지 기간을 3개
월로 연장이 필요함. 또한, 터미널 휴업기간에 임시 운영과 폐업 이후
새로운 터미널 조성까지 기존 터미널 부지·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시운영 관련 사항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과 아동과 중고생(미취학 청소년
포함) 요금할인으로 발생하는 매표수입 결손금 보전금액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통복지를 위해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지방공기업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금 보전’ 등을 통해
국비 지원도 없이 이미 막대한 재정지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물가인상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액 지속 증가로 재
정지원도 불가피하게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
소액을 보전할 경우, 시 재정여력 부족 및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지방재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매표 수입 감소액 보전을 위한 규정은 삭제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터미널 부지 내 부대시설 사업 또는 호텔, 판매시설 등 각종 개발이익 사업을 통해 매표수입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함.

(기획재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터미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바 개정 실익이 낮으며, 터미널 운영 관련 지원은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사항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국고 지원은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개선 등에 국한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